

I. 언론의 자유와 책임

1. 언론의 존재의의와 사명

인간 사회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관계에 의하여 유지되는데 그 유대관계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의사의 전달 즉, 정보의 상호 교류이다.

인간 사회가 기술의 발달과 민주화로 요약되는 19세기 시민사회를 거치면서 조직화, 거대화되어 오늘날과 같은 현대 정보화사회로 발전해 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언론이라는 정보전달조직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진실한 정보를 유통시켜 사회의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적·비판적 역할을 통하여 그 사회가 부패하지 않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내용은 공익적이어야 하고 진실해야만 한다.

언론이 갖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신장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은 물론이고 어떠한 사회세력에 의해서도 통제되거나 간섭받아서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이든 아니든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의 속성상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며, 언론보도의 신속성과 광파성(廣播性)으로 인해 그 피해 역시 엄청난 반면 완전한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이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역기능적 측면을 외면해서는 아니 되며, 그 대립되는 양 측면을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언론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으로 보호, 고양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언론활동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역기능과 권익 침해에 대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어장치 내지는 피해구제를 통한 책임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언론은 불구가 되어 자유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종국에는 그 존립기반까지 위협받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이러한 견지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그 허가나 검열제는 금지한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침해 시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함께 그 책임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다.

2.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의 책임

가. 언론환경의 변화

20세기 말에 이르러 컴퓨터가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인간사회는 이전의 수십 세기에 경험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빠른 변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의 등장은 물론이고 E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통신은 이전의 신문, 방송, 통신이 갖는 일방향적 정보전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 전부를 쌍방향 정보전달체계에 편입시킴으로써 하나의 국가사회, 나아가서는 전 지구사회가 단일한 정보전달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정보교류에 있어 동시성과 일체성이 실현되어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재편되는 엄청난 혁명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보의 유통속도와 유통량, 유통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늘어나고 넓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정보의 오류와 왜곡에 의한 피해발생 위험 역시 엄청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언론의 「책임영역」은 기존의 신문, 방송, 통신에 대한 전통적 대응방식과는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 모두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이를 잘 정비하고 체계화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언론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사실상 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언론의 「자유영역」보다는 「책임영역」의 중요성이 월등하게 커졌다고 할 수 있고, 거대 정보유통 조직에 의한 정보의 독과점 및 왜곡 문제 또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나. 언론의 책임보장 장치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책임언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의 자율적 수단에 의한 사전규제나 사후구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 같은 자율적 사전규제 장치로서는 ombudsman제도나 신문평의회 또는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각종 윤리위원회가 있으며 실제로 우리 언론계에서도 일부 운용되고 있으나, ombudsman이나 독자 모니터링제도 등의 자율적 사후구제 장치는 이제야 태동하는 단계에 있어 크게 미약한 실정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 그 자율적 피해구제 수단으로서 금전배상은 애당초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고, 원래의 보도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 등의 비금전적 구제 수단 역시 언론사 스스로의 구제만에 기대하기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어 언론의 자율적 구제에 의해서는 만족스런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사후적 구제장치로서 법원의 재판절차를 포함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기관이나 제3의 중재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행정기관이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의 자유는 곧 행정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 현행 제도상 언론피해 구제수단

앞서와 같은 원리에 따라 우리의 현행 법제상으로도 언론보도에 의한 권익 침해의 사

후적 구제는 전적으로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그 구제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금전배상에 의한 것과 비금전적 원상회복에 의한 것이 인정되는데, 그 중 금전적 배상에 의한 구제는 전적으로 법원이 맡고 있고,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을 통한 구제는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가 함께 맡고 있는바, 그 대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사적 구제수단

(가)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 언론기관은 물론 모든 개인과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됨
-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을 요하며 이는 모두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함
- 손해배상액은 제한이 없음

(나) 원상회복조치

1) 정정보도

- 민법 제764조(정정보도에 국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책임을 한 내용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을 요함
- 반론보도와는 달리, 원 보도내용이 허위임이 증명될 것을 요함

2) 반론보도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0조, 방송법 제91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8조의 4
-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함
- 정정보도와 달리, 반론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지 않는 한 원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행사가 용이하나 구제의 정도는 정정보도에 비해 다소 미흡함

(다) 사전금지(가처분)

- 민사소송법 제714조 내지 제723조(민사상의 분쟁 일반에 관한 포괄적 규정임)
- 당해 표현물의 편성, 제작, 반포, 판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법익 침해가 우려되면 즉하고 반드시 불법행위가 성립할 필요는 없음
-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되므로 그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다른 법익의 침해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2) 형사적 구제수단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내지 제310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 국가적·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은 간접적으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함

II. 언론중재제도의 의의와 내용

1. 언론중재제도의 의의

정기간행물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중재기관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제17조 제1항), 피해자나 언론사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그 협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직접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하여 중재절차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가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9조 제1항), 방송법(제91조)은 정기간행물법의 위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의 해결은 당사자들 스스로의 합의와 법원의 재판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래에는 재판 외의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중재와 조정, 알선, 화해 등의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중재란 법률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 대신 중재인이라는 제3자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조정은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분쟁 대상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이나 조언을 통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절충안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권유하는 등으로 양자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정기간행물법상의 언론중재는 제3자인 언론중재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화해와 다르고, 제3자가 법원에 대신하여 판정을 하지는 아니하고 알선, 권유를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친다는 점에서 본래 의미의 중재와도 다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결국 언론중재는 그 법문상의 표현과는 달리 중재가 아닌 조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정기관과 조정절차 등이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조정 결과 이루어진 합의에 대하여는 특별히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정기간행물법 제18조 제7항) 조정 일반의 그것과 다른 차이가 있다.

2. 언론중재제도의 역할

그러면 폐지된 언론기본법과 이를 대체한 현행 정기간행물법 등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언론중재를 거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것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 내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